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97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민홍철 · 정준호 · 임호선
박홍배 · 박용갑 · 김문수
한정애 · 문진석 · 문대림
김주영 · 윤종균 · 손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바둑 전문인력 양성,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바둑진흥기본계획에 바둑 교육의 학교 · 교육기관 교육과정 연계, 국민 건강 · 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및 바둑의 스포츠화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계획 · 실태조사 · 예산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시행계획 · 실태조사 ·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바

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기본계획에 바둑의 교육·보급 및 학교·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국제스포츠 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연구소·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바둑단체·바둑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바. 바둑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바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사.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둑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차. 포상, 바둑단체 등에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조세 감면 및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둑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를 “바둑문화 및 바둑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지적 능력 향상,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스포츠화·세계화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기보가 가지는 상업적·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바둑전문기사와 바둑단체가 이를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바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바둑시설 등의 여건 조성, 바둑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 및 바둑 대회의 개최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바둑진흥기본계획의”를 “바둑진흥기본계획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하고, 연도

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보급에”를 “보급 및 초·중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를 “협력, 국제행사 개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 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

4의2. 고령화 시대의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연구소·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 관련 공공기관·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예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바둑단체, 그 밖에 바둑 분야의 사업자가 바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4(바둑진흥자문위원회) ① 바둑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바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바둑대회의 육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둑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대회의 유지·확대와 바둑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

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바둑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u> 다.	제1조(목적) ----- ----- ----- <u>바둑문화 및 바둑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 지적 능력 향 상,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스포츠화 · 세계화에</u> -----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u>마련하여야</u>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 <u>수립 · 시행하여야</u>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국가는 기보가 가지는 상업 적 ·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바둑전문기사와 바둑단체가 이 를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u>
<u><신 설></u>	④ <u>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u>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바둑의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5. ~ 7. (생략)

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바둑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바둑시설 등의 여건 조성,
바둑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
및 바둑 대회의 개최를 지원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 시행 등) ① -----
-----이 법의 목적을 달
성하기-----

-----시
행하여야 하고, 연도별 세부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보급 및 초·
중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4의2. 고령화 시대의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

8. 바둑 국제 교류 ·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 11. (생략)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8. -----협력, 국제행사 개최, 올림픽·아시안 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

9. ~ 11.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연구소·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신 설>

<신 설>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 관련 공공기관·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예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바둑단체, 그 밖에 바둑분야의 사업자가 바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4(바둑진흥자문위원회) ①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
전용경기장의 조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바둑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으로 바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
전용경기장의 조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른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그 운영
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바둑대회의 육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둑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둑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신 설>

<신 설>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대회의 유지·확대와 바둑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바둑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u>위탁할 수 있다.</u>
--	------------------